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가단52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피고E

변론 종결2018. 9. 13.

판결 선고2018.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1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 C, D은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의 아들인 G의 아들로, F의 손자이다.

나.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5. 피고 앞으로 2017. 2. 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증여는 F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증여는 F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고 및 G에게 의존하거나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증여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이 사건 증여는 F이 육체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이다.

나. 관련 의학용어

1) 의학적으로 사람의 의식상태는 alert, stuporous, comatous, drowsy, irritability 등으로 평가하는데, alert는 정상적인 의식상태, stuporous는 혼미한 의식상태로 지속적인 강력한 자극을 주면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 comatous는 혼수상태로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 drowsy는 기면 상태로 졸음이 오는 상태, irritability는 자극과민성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폭력적인 행동 등 흥분을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지남력 있음이란,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 관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상태이고, 지남력 없음이란 위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인정사실

1) F은 평소 간경변 또는 간성혼수, 신부전증의 질병이 있었고, 2017. 1. 10.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조치를 받았다. 당시 F의 상태에 관하여 의무기록 사본에는 "stupor"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은 2017. 1. 10. 서울보훈병원으로 전원되어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가 2017. 1. 18. 퇴원하였다. 진료기록사본에는 F의 2017. 1. 12. 상태에 관하여 오전에는 "alert, 지남력 없음", 오후에는 "지남력 있음"의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입원 기간 동안 F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주로 irritability 상태에서 지남력이 없었다. 한편 서울보훈병원의 2017. 1. 18. 퇴원간호계획지에는 F의 퇴원시 의식상태에 관하여 "명료"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와 G은 2017. 1. 18. 원고들의 동의하에 서울보훈병원에서 F의 퇴원 절차를 마쳤고, 2017. 1. 18. 대전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F은 drowsy 상태로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F은 2017. 1. 18. 충남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F은 언어지시에 반응하나 지남력 상실 상태였고, 내원동기에 관하여는 "암모니아 수치 오르면서 의식 명료하지 않아 관장 시행 후 의식은 좀 깨었으나 신장 수치가 높아 투석이야기 듣고 큰 병원 권유하여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은 2017. 1. 19. 01:00 증상이 호전되어 G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4) F은 2017. 1. 26. 서울보훈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오후 3:40경 alert 상태였고(갑 제11호증에 의하면,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지남력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오후 8:20경에는 stuporous 상태가 되었다. F은 2017. 1. 27.와 2017. 1. 28. 오전 12:00경까지 comatous 상태였다가 오전 8:00경 이후 stuporous 상태가 되었고, 2017. 1. 29. 오전 12:00경 drowsy 상태로 그 후 지남력 없음 상태이었다가(간호기록 사본과 달리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에는 2017. 1. 29. F이 alert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7. 1. 30. 오후 7:40에는 지남력 있음 상태가 되었고 2017. 2. 4. 오전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어 퇴원하였다. 서울보훈병원의 2017. 2. 4. 퇴원간호계획지에는 F의 퇴원시 의식상태에 관하여 "명료"로 기재되어 있다.

5) F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원고 A과 함께 거주하는 강서구 H아파트, 101동 603호에

보관하고 있었다. G은 2017. 1. 24. F에 관하여 용인시 기흥구 소재 G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F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또한 F은 2017. 2. 6.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F은 2017. 2. 8. G, 피고와 제주도 소재 법무사 I 사무소로 가서 위 법무사의 동석 하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6) F은 2017. 2. 11. 서울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의식 수준은 alert 상태였으나 부르는 말에 답변하다가 답변하지 않고 졸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었고, 16:1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F은 2017. 2. 12. 오후 7:18경 comatous 상태, 오후 9:05경 semicomatous 상태가 되었다가 2017. 2.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8, 10, 12, 13, 14, 17, 18, 26호증, 을 제2, 4, 5, 6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F의 진정한 증여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처럼 진행된 간경변 환자의 경우 단백질을 다량 복용하거나, 탈수, 변비, 출혈 등이 원인이 되어 간내 독성이 해독되지 못하면 지남력 있음의 상태에서 지남력 없음의 상태로 변동되는 등 수시로 그 의식상태가 변동될 수 있다.

실제로 F은 2017. 1. 27.과 2017. 1. 28. 오전까지 comatous상태에 있었으나 2017. 1. 30.

오후부터 2017. 2. 4.까지는 지남력 있음의 상태가 유지되었는바, 달리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F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F은 2017. 2. 6.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7. 2. 8.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③ 원고들은 F이 평소 G이나 피고와 거의 왕래가 없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아니라 손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갑 제28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D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제사를 모시는 자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에게 제사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6. 8. 22.경 원고 A과 몸싸움을 하여 2~3주의 회복기간이 예상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출혈반을 입고 그 직후 대전 소재 G의 집에 찾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닌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서수정

별지